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06호 2018.11.20(화)

훈 령

- 제189호 :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고 시

- 제2018-201호 :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3

공 고

- 제2018-1646호 : 운행정지자동차 공시송달공고 6
- 제2018-1648호 : 345kV 신옥천-청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7
- 제2018-1650호 : 고액 채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9
- 제2018-1653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0
- 제2018-1654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1
- 제2018-1656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연산리도210호(2차)공고] 22
- 제2018-1658호 : 소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공고 24
- 제2018-1664호 : 논산 도시계획시설(중로3-14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5
- 제2018-1665호 : 연무 도시계획시설(소로2-6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9

회 람							
--------	--	--	--	--	--	--	--

공 고
(입법예고)

- 제2018-1649호 :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제2018-1660호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제2018-1662호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0
- 제2018-1667호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7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논 산 시 장 



2018년 11월 20일

논산시 훈령 제189호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을 “시민감사관은 논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자격 등) ① <u>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중에서 지역별·직능별로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u>	제3조(구성 및 자격 등) ① <u>시민감사관은 논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u> ----- ----- -----.

논산시고시제2018-201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논 산 시



○ 도로명주소 고시 : 충청남도 논산시 자산2길 39(자산동)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6건)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민원토지과(☎041-746-5644, 564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1.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38-31, 148-2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논산평야로1119번길 106	20090909	논산평야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11,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1212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146-31 (내동)	20090909	논산시 중심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도로로서 중앙로로 명명
3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10-2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962-11 (부창동)	20090710	지역명칭 반영
4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176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102-34 (부창동)	20090909	기존 해월로를 역전로까지 직진성을 고려하여 연장한 도로구간으로 해창마을(백제시대 군량창고가 있었다하여 붙여짐)을 시점으로 반월동, 화지동, 덕지동을 잇는 데
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25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왕릉로48번길 24-1	20091019	왕릉로의 시작점에서 약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83-4, 83-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242-2	20081201	편안함을 주는 땅이란 의미의 특안성의 동쪽에 있는 도로라는 의미로 동안로라고 명명
7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137-2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백일현로 272-85	20081201	조선후기의 무신인 백일현 이삼장군의고택(충청남도 민속자료 7호)을 경유하는도로로서 역사적 인물 적용
8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449, 449-4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454-3	20090825	선비의 고장과 절의정신 반영
9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633-4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357번길 158-18	20081201	선비로의 시작점에서 약3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633-6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357번길 158-12	20081201	선비로의 시작점에서 약3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614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논산대로94번길 44	20090909	논산대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569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길 16-9	20081201	행정구역명칭(방축리)을 이용하여 방축길로 명명
13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569-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길 16-11	20081201	행정구역명칭(방축리)을 이용하여 방축길로 명명
14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 902-8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2길 39 (지산동)	20091019	지산길의 시작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5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910-7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404번길 121-73	20081201	계백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4,0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46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탐정로215번길 66	20081201	탐정로의 시작점에서 약2,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254	논산시 연무읍 왕릉로48번길 22-1	20181113	건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2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176	논산시 해월로 102-34	20181115	건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7. (15일간)
3. 공고대상 : 충남38라5298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차량등록부서(☎041-746-6312)로 문의바랍니다.

2018. 11. 12.

논 산 시



논산시공고제2018-1648호

345kV 신옥천-청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논산시 일원의 345kV 신옥천-청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사건번호 : 18수용0312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07. 05.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아 래-

1. 사 업 명 : 345kV 신옥천-청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3. 열람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6.(15일간)
4. 열 랐 서 류 : “붙임참조”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2018년 11월 12일

논 산 시 청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사업명: 345kV 신옥천-청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사건번호: 18수용0312호, 재결일: 2018.07.05.)

해당 소재지	연번	구분	이름	주소
논산시	1	소유자	무안박씨신제공종중	충남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 93 (대표자 : 박종국)
논산시	2	소유자	무안박씨암천처사공종중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 20
논산시	3	소유자	박우영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 31

논산시공고제2018-165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13. ~ 2018. 11. 28. (15일간)
3. 공고대상 : 불입파일 참조
4. 공고내용

가. 폐업된 법인, 중고차매매상사 및 사망자 명의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자동차운행정지명령·직권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나. 해당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련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 문의사항 : 논산시 차량등록부서(041-746-6312)

2018. 11. 13.

논 산 시



운행정지명령대상(개인, 사망자)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위반자명	개인법인구분	운행정지사유
1	충남38마8465	길*용	개인	사망
2	55도2922	길*용	개인	사망
3	55우2498	김*섭	개인	사망
4	09누5120	김*섭	개인	사망
5	94서6132	김*덕	개인	사망
6	충남1수8988	김*덕	개인	사망
7	충남1러5874	김*배	개인	사망
8	37고9449	김*중	개인	사망
9	94서7968	김*숙	개인	사망
10	충남7누9751	김*겸	개인	사망
11	충남38가3544	김*겸	개인	사망
12	충남38다9558	노*희	개인	사망
13	94거7425	문*삼	개인	사망
14	충남83노4333	문*삼	개인	사망
15	25다3901	박*수	개인	사망
16	충남38마3360	박*희	개인	사망
17	충남38라6356	박*희	개인	사망
18	94서2347	박*배	개인	사망
19	충남5누1622	박*배	개인	사망
20	충남7더2383	박*배	개인	사망
21	충남38가8613	박*배	개인	사망
22	충남38다1405	박*월	개인	사망
23	충남84나2851	변*희	개인	사망
24	05로9754	변*희	개인	사망
25	73부1873	송*섭	개인	사망
26	09노3720	엄*화	개인	사망
27	55도4979	윤*순	개인	사망
28	88가9893	이*춘	개인	사망
29	충남38마6905	이*희	개인	사망
30	충남84나6606	이*생	개인	사망
31	충남38가5281	이*재	개인	사망
32	55도7391	이*례	개인	사망
33	충남74가3107	장*식	개인	사망
34	충남84고3629	정*희	개인	사망
35	충남38라4567	조*욱	개인	사망
36	대전7더4098	조*철	개인	사망
37	충남38나3247	조*호	개인	사망

38	충남38다6392	최*준	개인	사망
39	충남38마3228	한*철	개인	사망

운행정지명령대상(개인, 상품보유자220)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위반자명	개인법인가분	운행정지사유
1	93두153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	39두831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	94어778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	77루773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	91조238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	39모254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	11더453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	64모316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	39어734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	91나789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	88가268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	10두623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	11가652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	52저716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	60가110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	31너910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	39누95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	21루192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	26노129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	39누960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	06우987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2	09루951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3	39누954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4	39두846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5	39누93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6	39누97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7	39누951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8	34마908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9	94어776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0	39누938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1	62구978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2	55루410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3	35모355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4	94어774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5	39모270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6	58다606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7	92어462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8	09루957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39	10고267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0	31다763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1	10서774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2	57라712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3	39누979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4	64모340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5	77루793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6	10모726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7	05소842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8	11더321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49	39누959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0	39두826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1	39누954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2	94서691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3	39누974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4	94서744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5	09루957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6	62구976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7	77루772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8	09다720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59	39누954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0	39누974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1	09루999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2	39누965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3	39누942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4	39누958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5	09오846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6	07로424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7	76소332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8	41머806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69	09모542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0	09라843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1	77루775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2	09라960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3	09루957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4	62구970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5	15우619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6	26오415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7	39누934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8	77루239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79	03로136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0	39누939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1	39보512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2	39누976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3	09모549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4	01소351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5	39누95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6	39누961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7	10보709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8	39누931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89	52저709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0	09루959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1	09고154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2	39두888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3	09루978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4	93마670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5	57라164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6	52부954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7	32나52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8	86보523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99	39누974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0	09루970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1	39누934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2	02다50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3	94서739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4	39누97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5	10서775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6	94어778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7	94서722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8	09루958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09	05거209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0	26노11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1	39누959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2	39두815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3	08라485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4	10고601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5	52머234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6	10서771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7	52우902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8	39누953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19	39누950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0	25조255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1	06부413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2	08루799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3	62구919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4	10구855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5	26노115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6	95무289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7	09무791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8	79머159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29	62구91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0	39두842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1	39누934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2	39두845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3	05노398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4	39누950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5	09루950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6	51모96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7	09무76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8	62구977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39	88나252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0	51모938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1	94어77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2	01조301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3	17고822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4	39누956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5	77루235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6	39누951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7	91나115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8	11러362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49	39누979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0	77루236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1	10루991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2	59누621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3	39누950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4	08누986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5	39누956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6	39누930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7	10서399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8	08수232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59	39누950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0	39누974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1	40가832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2	94서696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3	90무50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4	39누93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5	94어778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6	06무387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7	39누98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8	57다303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69	89무387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0	39버797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1	07마215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2	77루238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3	80루120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4	52나938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5	39누953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6	09라961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7	39누972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8	52저716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79	21노153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0	34거524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1	02루809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2	39누954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3	52저714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4	78가124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5	29무717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6	39두832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7	39수59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8	39누958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89	39누958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0	39누952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1	39누934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2	32나653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3	59누628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4	08루726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5	77루774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6	10무7316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7	39누958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8	39누9653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199	39누934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0	26오462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1	39누952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2	13무128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3	39두830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4	94러107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5	06도896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6	39누946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7	08루773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8	39누931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09	09루9988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0	39모352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1	39누9374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2	28버399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3	31거7127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4	02주165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5	31다624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6	39누9441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7	39머2779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8	39두8205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19	62구9712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220	88가9720	김*정	개인	매매상품용

운행정지명령대상(법인, 일반차량)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위반자명	개인법인가분	운행정지사유
1	01더4803	주식회사***관광	법인	청산종결간주
2	77우7129	**기계주식회사	법인	청산종결간주
3	충남38마4276	**엔텍(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4	충남38라2789	(주)**장갑	법인	청산종결간주
5	충남38다5646	**정보(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6	충남84가7697	**식품(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7	충남74가4992	진***공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8	충남74가5309	(주)대**학	법인	청산종결간주
9	충남84나7339	(주)삼***호스	법인	청산종결간주
10	충남84나6148	(주)놀*	법인	청산종결간주
11	53보3310	(주)성***회사법원	법인	청산종결간주
12	50더5029	(주)대*	법인	청산종결간주
13	충남38라1424	(주)**건설	법인	청산종결간주
14	충남84나9137	구*건설(주)	법인	해산간주
15	55도9130	(주)한국자**학	법인	청산종결간주
16	92보2418	(주)서*	법인	청산종결간주
17	27부9872	(주)서*	법인	청산종결간주
18	충남38나7176	<주>구*	법인	청산종결간주
19	충남38나7191	<주>구*	법인	청산종결간주
20	충남85가5064	기*물류	법인	청산종결간주
21	충남7므1621	기*물류	법인	청산종결간주
22	충남74가6321	현****학공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23	충남38라7191	현****학공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24	충남84나6774	화****지대산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25	충남84나4738	화****지대산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26	충남84나8634	성****주식회사	법인	청산종결간주
27	충남84나6619	성****주식회사	법인	청산종결간주
28	충남38마4611	에**티(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29	충남38마8261	에**티(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30	충남38라4789	다**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31	충남84나6307	다**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32	충남38라6171	세**설(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33	94서4535	(주)에***프	법인	해산간주
34	08부3515	(주)에***프	법인	해산간주
35	22노5956	(주)녹**산	법인	청산종결간주
36	94서4255	(주)녹**산	법인	청산종결간주
37	01주4133	(주)녹**산	법인	청산종결간주

38	55도1914	푸***산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39	충남84나5109	푸***산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40	94서3434	푸***산업(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41	충남84나6238	(주)정**호	법인	청산종결간주
42	94서2720	(주)정**호	법인	청산종결간주
43	충남84나1295	(주)정**호	법인	청산종결간주
44	충남84나3233	광**장(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45	충남38다5450	광**장(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46	충남38라8882	광**장(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47	77누4106	(주)이-**시스템	법인	청산종결간주
48	77루1646	(주)이-**시스템	법인	청산종결간주
49	94서4889	(주)이-**시스템	법인	청산종결간주
50	충남84나7214	형***화학(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1	충남84나7222	형***화학(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2	충남84가5060	형***화학(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3	충남84나7245	형***화학(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4	94서3987	넥****오텍(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5	충남84나6185	넥****오텍(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6	94거5915	넥****오텍(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7	94서2888	넥****오텍(주)	법인	청산종결간주
58	충남84나3698	충**설(주)	법인	합병폐쇄
59	충남84가8220	충**설(주)	법인	합병폐쇄
60	충남84가7935	충**설(주)	법인	합병폐쇄
61	충남38라1200	충**설(주)	법인	합병폐쇄
62	충남84가9921	충**설(주)	법인	합병폐쇄
63	충남84가8157	충**설(주)	법인	합병폐쇄
64	55오1559	충**설(주)	법인	합병폐쇄
65	39두8283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66	57가1229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67	94서7063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68	90루8713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69	94서6373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70	55구3572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71	88러1972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72	87구5526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73	08다4021	(주)대**텍	법인	청산종결간주

논산시공고제2018-1653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2.

논 산 시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하림	아산이에스에스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205-2, 205-72, 205-92, 205-205 (4필지)	
발전용량	99.18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고 하 립	권 호 영
사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전광역시 중구
하개(인가)일	2018. 09. 10.	2018. 11. 12.

끝.

논산시공고제2018-1654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2.

논 산 시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태승 태양광발전소	태승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288-3 (1필지)	
발전용량	155.52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문 옥 이	조 천 휘
사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하개(인가)일	2018. 06. 18.	2018. 11. 12.

끝.

논산시공고제2018-1656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논 산 시



1.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내역

구분	읍 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명	노선 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 점	종 점			도로 너비	포장 너비	
당초	연산면	농어촌 도 로 (리도)	고관선	리 도 210호	연산면 관동리 629-1	연산면 관동리 605-28	0.251	연산면 관동리	6.5m	5.5m	연산리도210호 확 포 장 공 사 (2 차) 로 인 한 지 정
변경	연산면	농어촌 도 로 (리도)	고관선	리 도 210호	연산면 관동리 629-8	연산면 관동리 605-42	0.251	연산면 관동리	6.5m	5.5m	토지분할에 의한 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 : 2018. 4. . ~ 2018. 12. 31.

나. 변 경 : 2018. 4. . ~ 2019. 12. 31.

3. 사업시행자 : 논산시청

4. 설계도서·자금계획 등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개월

나. 장 소 : 논산시청 도로교통과(☎041-746-62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조서 : 붙임 토지세목변경조서와 같음

붙임 : 1. 노선지정도 1부. (게재생략)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변경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충청남도)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시	면	리	지 번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성명 또는 칭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당 초											변 경
합계				21필	22필		38,545	2,077	2,256			9인	1인		
1	논산	연산	관동	629-1	629-8	도	130	179	130		국 (건설부)				
					629-9	도	47		47		국 (건설부)				
2	논산	연산	관동	83-4	83-4	도	63	13	63		계룡시 두마면 엽사리 282 성원아파트4-1101	임 현 순	논산동부농 업협동조합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36	근저당권 설 정
3	논산	연산	관동	83-3	83-6	답	67	55	67		계룡시 두마면 엽사리 282 성원아파트4-1101	임 현 순	논산동부농 업협동조합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36	근저당권 설 정
4	논산	연산	관동	83-5	83-5	답	17	17	17		계룡시 두마면 엽사리 282 성원아파트4-1101	임 현 순	논산동부농 업협동조합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36	근저당권 설 정
5	논산	연산	관동	53-2	53-3	도	1	1	1		논산군 연산면 관동리 192	도 권 희			
6	논산	연산	관동	52-3	52-6	도	4	7	4			국(건설 교통부)			
7	논산	연산	관동	52-1	52-5	답	335	337	335			논 산 시			
8	논산	연산	관동	51-5	51-8	답	453	442	453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4길 15	한 존 성	논산계룡농 업협동조합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36	근저당권 설 정
9	논산	연산	관동	51-6	51-10	도	12	23	12		논산군 연산면 관동리 90	장 용 업			
10	논산	연산	관동	49-2	49-12	도	21	9	21		논산군 연산면 관동리 90	장 용 업			
11	논산	연산	관동	615-2	615-4	구	36	36	36			국 (건설부)			
12	논산	연산	관동	42-4	42-6	답	170	170	170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316	도 우 희			
13	논산	연산	관동	605	605	천	36,595	376	306			국 (건설부)			
14	논산	연산	관동	61-7	61-7	도	69	69	69			논 산 시			
15	논산	연산	관동	49-5	49-5	도	17	17	17		논산군 연산면 관동리 90	장 용 업			
16	논산	연산	관동	49-7	49-11	답	229	227	229			논 산 시			
17	논산	연산	관동	49-6	49-10	답	77	75	77			논 산 시			
18	논산	연산	관동	49-1	49-9	답	118	120	118			논 산 시			
19	논산	연산	관동	50	50-2	답	43	43	43		논산군 연산면 관동리 529	서 창 식			
20	논산	연산	관동	605-1	605-41	답	18	17	18		논산군 연산면 관동리 206	도 용 희			
21	논산	연산	관동	605-28	605-42	답	23	23	23			논 산 시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논산시공고제2018-1658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논 산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김 * 찬 외 3인		
	대표자 (성 명)	김 * 찬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9번길 *-*
소하천명		오작소하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논산시 벌곡면 김천리 510번지선		
	면적	54m ²	공작물설치	교량개량
	기간	2018. 11. 19. ~ 2020. 12. 31.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논산 도시계획시설(중로3-14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논산시 덕지동 85-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3-14호)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논산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14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0일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논산 도시계획시설(중로3-14호)
- 명 칭 : 덕지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4호)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 덕지동 85-3번지 일원

다. 면적 또는 규모

- B=12.0m, L=700m, 면적(A)=8,586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바. 공람기간 : 2018. 11. 20. ~ 2018. 12. 7.(14일 이상)

사. 공람장소 : 논산시청 도시재생과 (☎041-746-621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별첨1

[별첨1]

- 편입토지조서 -

번호	동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자
						주 소	성 명		
1	덕지	85-3	답	1	1	267	한진수		
2	덕지	232-3	답	11	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03-8 현암마을동성2차아파트 106-1104	김규용		
3	덕지	233-6	답	5	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03-8 현암마을동성2차아파트 106-1104	김규용		
4	덕지	570	도	1,111	1		국(국토 교통부)		
5	덕지	239-3	도	36	3		논산시		
6	덕지	239-4	답	8	8	245-1	민경숙		
7	덕지	221-3	답	5	5	덕지1길 18 (덕지동)	홍성대		
8	덕지	219-19	잡	20	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 공사		
9	덕지	219-21	유	8	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 공사		
10	덕지	194-3	전	41	41		논산시		
11	덕지	192-3	전	99	99		논산시		
12	덕지	195-3	전	8	8	333	김용복		
13	덕지	191-5	대	33	33		논산시		
14	덕지	191-6	전	86	86		국(기획 재정부)		
15	덕지	191-7	대	29	29		국(재무 부)		
16	덕지	196-4	천	469	25		국(건설 부)		
17	덕지	196-6	답	38	38	은진면 시민로 18-9	조지선		
18	덕지	198-14	답	5	5	198	양현문		
19	덕지	198-13	답	8	8	덕지길 44-5 (덕지동)	김용관		
20	덕지	324-5	전	70	70		국(국토 교통부)		
21	덕지	324-4	전	147	147		국(국토 교통부)		

22	덕지	324-3	전	1	1		국(국토 교통부)		
23	덕지	328-10	전	9	4		국(국토 교통부)		
24	덕지	328-12	전	397	224		국(국토 교통부)		
25	덕지	328-15	전	47	4		국(국토 교통부)		
26	덕지	563	천	238,433	7,701		국(건설 부)		
계		26필지		241,125	8,585				

- 지장물조서 -

번호	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덕지	563천	비닐하우스	철, 비닐	271	267	한진수		
			비닐하우스	철, 비닐	33				
			작물		303				
2	덕지	563천	논		4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03-8 현암마을동성 2차 아파트	김규용		
3	덕지	563천	논		190	245-1	민경숙		
4	덕지	563천	비닐하우스	철, 비닐	4	덕지1길18(덕지동)	홍성대		
			비닐하우스	철, 비닐	4				
			비닐하우스	철, 비닐	4				
			비닐하우스	철, 비닐	1				
			비닐하우스	철, 비닐	3				
			비닐하우스	철, 비닐	7				
			비닐하우스	철, 비닐	71				
			작물		88				
5	덕지	563천	작물		17	477	김만길		
6	덕지	563천	작물		115	경기도의왕시포일 동 487	한국농촌공 사		
7	덕지	192-3 전	작물		234	관촉로271(취암동)	임재용		
		194-3전							
8	덕지	191-6 전	컨테이너	철	18	191-6전	국(기확재 정부)		
			담장	콘크리트블 럭	37				
9	덕지	563천	작물		363	덕지길44-5(덕지동)	김용관		
10	덕지	563천	천막	철, 천막	11	323-8	오대탁		
11	덕지	324-5 전	작물		9	대전 서구 관저동 990 대자연마을아파트 108-1106	이광순		

연무 도시계획시설(소로2-6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99-2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연무 소로2-6호)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연무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6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0일

논 산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연무 도시계획시설(소로2-6호)
- 명 칭 :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99-29번지 일원

다. 면적 또는 규모

- B=8.0m, L=518m, A=4,312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바. 공람기간 : 2018. 11. 20. ~ 2018. 12. 7.(14일 이상)

사. 공람장소 : 논산시청 도시재생과 (☎041-746-621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및 관계도서 : 별첨1

[별첨1]

- 토지 편입조서 -

번호	토지소재지					면 적(m ²)		소 유 자		권 리 자	
	시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총 계				-	-	7,103	4,312		-		
1	논산	연무	동산	899-29	전	431	410	논산시			
2	“	“	“	899-57	대	104	80	논산시			
3	“	“	“	899-58	대	177	177	박순희	349-2	논산축산업협 동조합	논산시 내동 931
4	“	“	“	899-50	대	60	60	정정현	동산리 899-19		
5	“	“	“	899-60	대	5	5	정정현	동산리 899-19		
6	“	“	“	899-61	대	41	41	논산시			
7	“	“	“	899-62	전	54	54	논산시			
8	“	“	“	899-66	대	52	52	논산시			
9	“	“	“	899-64	전	144	144	논산시			
10	“	“	“	899-51	전	49	49	논산시			
11	“	“	“	899-59	도	86	86	논산시			
12	“	“	“	885-17	대	27	27	논산시			
13	“	“	“	885-18	대	800	362	논산시			
14	“	“	“	885-21	대	56	56	정일호	동산리882	박휘찬	은진면 토양리 산28
15	“	“	“	885-22	대	37	37	원공철	898-14		
16	“	“	“	885-19	대	6	6	논산시			
17	“	“	“	885-20	대	18	18	이정임	885-12		
18	“	“	“	886-7	대	22	22	논산시			
19	“	“	“	886-8	대	71	71	논산시			
20	“	“	“	886-9	대	3	3	논산시			
21	“	“	“	887-18	대	39	39	논산시			
22	“	“	“	887-23	대	5	5	논산시 외 1인			
23	“	“	“	887-19	대	8	8	논산시			
24	“	“	“	887-7	대	197	197	논산시 외 1인			
25	“	“	“	887-20	대	27	27	논산시			
26	“	“	“	887-21	대	32	32	논산시			

번호	토지소재지					면 적(m ²)		소 유 자		권 리 자	
	시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총 계				-	-	7,103	4,312		-		
27	논산	연무	동산	887-15	대	1	1	논산시			
28	“	“	“	887-16	대	1	1	논산시			
29	“	“	“	887-22	대	48	48	논산시			
30	“	“	“	887-17	대	12	12	논산시		논산축산업협 동조합	논산시 내동 931
31	“	“	“	887-13	대	3	3	박덕길 외 2인	894		
32	“	“	“	894-115	대	53	29	국(재무부)			
33	“	“	“	888-88	전	54	54	논산시			
34	“	“	“	894-116	대	36	2	국(재무부)			
35	“	“	“	894-129	대	69	15	국(재무부)			
36	“	“	“	888-93	전	22	22	논산시			
37	“	“	“	894-139	도	1,760	280	국(건설부)			
38	“	“	“	888-92	전	24	24	서영식	동산리 888-10		
39	“	“	“	888-91	대	142	142	서영식	동산리 888-10		
40	“	“	“	888-90	대	45	45	논산시			
41	“	“	“	894-370	대	2	2	김중식	892-6	박휘찬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산28
42	“	“	“	894-344	대	3	3	국(재정경제부)			
43	“	“	“	888-89	대	73	73	한승희	888-1	연무신용협동 조합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02
44	“	“	“	894-372	대	53	53	논산시 외 1인			
45	“	“	“	894-373	대	20	20	김덕수	성남시분당구 서현동91. 한양@ 320/1905		
46	“	“	“	894-365	대	82	7	논산시			
47	“	“	“	894-233	도	1,235	1,167	박경종 외2인	의정부시의정부동 227-11		
48	“	“	“	894-371	대	18	18	논산시			
49	“	“	“	894-374	대	21	21	논산시			
50	“	“	“	894-375	대	4	4	김동기	894-226		
51	“	“	“	894-386	대	27	27	논산시			
52	“	“	“	894-376	대	25	25	서해석외2인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43		
53	“	“	“	894-377	대	125	118	조말남	849-247		
54	“	“	“	894-359	도	594	28	논산시			

- 지장물 편입조서 -

연번	시	읍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논산	연무	동산	899-57	창고	함석/스레트	12.25	이규희	논산시 두마면 남선리 935-4		
					가옥	시멘트블럭조/함석	193.4				
					화단옹벽	T=0.1 H=1.0 ~1.2/콘크리트	15.3m				
					처마	B=1.0 L=15.7/천막	15.7				
					지붕	스레트	13.74				
2	"	"	"	899-50	화단옹벽	콘크리트 H=0.5 T=0.1	16.9m		동산7동 899-19		
					담장	시멘트 블럭조 H=2.5	3.3m				
					대문기둥	벽돌조 0.5X0.6 H=2.1	2EA				
					대문기둥	벽돌조 0.5X0.6 H=1.8	3EA				
					담장	시멘트블럭조 H=1.7	4.2m				
					계단	콘크리트+화강석 B=1.6L=5.0H=0.6	8.0				
					대문지붕	콘크리트+기와 B=2.2L=6.0	2EA				
					바닥깨기	콘크리트 T=0.1	19.1				
					대문	철재 H=2.1	1EA				
3	"	"	"	563	가옥	콘크리트 골조 3.0X3.0	9.0		동산리 899-20		
					가옥	콘크리트골조 15.0X2.7	40.5				
					가옥	콘크리트골조 10.7X4.8	51.4				
					가옥	콘크리트골조 8.0X1.9	15.2				
					가옥	콘크리트골조 5.5X6.0	33.0				
4	"	"	"	899-62	담장	콘크리트 H=1.9 T=0.15	13.8m	심철식	동산7동 899-28		
					대문기둥	콘크리트 0.65X0.4 H=2.1	3EA				
					대문기둥	콘크리트 6.0X2.0 T=0.3	1EA				
					사철나무	30년생	2주				
					무과나무	15년생	1주				
					감나무	15년생	1주				
					향나무	15년생	1주				
5	"	"	"	899-66	담장	벽돌조 H=1.9	5.2m	천기영	동산리 899-45		
					대문기둥	벽돌조 0.7X0.4 H=2.3	2EA				
					화단옹벽	콘크리트옹벽 H=0.5 T=0.15	4.7m				
					가옥	함석 11.9X5.1	58.4				
					대문	철재 B=2.5 H=2.0	1EA				
					바닥깨기	콘크리트 T=0.2	9.0				
6	"	"	"	899-49	간판	콘크리트 0.8X0.8X=0.6	1EA	정유예	동산7동 885-13		

연번	시	읍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1	논산	연무	동산	887-23	가옥	콘크리트 8.1X7.0/스레트	56.7	전명구	동산리 887-1		
					지붕	스레트 4.0X8.1	2EA				
					대문	철재 1.7X1.2	1EA				
12	"	"	"	887-23	가옥	콘크리트 2.8X7.0/스레트	19.6	최송옥	동산2동 894		
					지붕	스레트 4.0X2.8	2EA				
					대문	철재 B=1.2 H=1.7	1EA				
13	"	"	"	887-3	가옥	콘크리트 4.5X7.0/스레트	31.5	박금택	동산리 887-3		
					처마	스레트 5.2X0.6	1EA				
					지붕	스레트 4.5X5.0	2EA				
					대문	유리 B=1.9 H=1.8	1EA				
14	"	"	"	887-4, 15	가옥	콘크리트 9.7X7.0/함석	67.9	김정숙	동산7동 887-6		
					지붕	함석 9.7X7.0	1EA				
					처마	함석 9.7X1.0	9.7				
					대문	철재 B=2.3 H=2.4	1EA				
15	"	"	"	887-16, 17	가옥	콘크리트조 12.7X7.0/함석	88.9	김정숙	동산7동 887-6		
					지붕	함석 12.7X7.6	1EA				
					담장	시멘트블럭 1.4X11.0	11m				
					지붕	스레트 2.3X4.7	1EA				
					창고	콘크리트조 2.3X4.7	10.8				
					감나무	10년생	1주				
16	"	"	"	888-92	담장	시멘트블럭 H=1.5	6.7m	박제순	동산7동 888-25번지		
					담장	시멘트블럭 H=1.6	1.2m				
					담장	시멘트블럭 H=0.6	3m				
					바닥깨기	콘크리트 T=0.1	14.2				
					대문	철재 B=3.2 H=1.8	1EA				
17	"	"	"	888-91	가옥	콘크리트조 (4.2X5.3)+(1.8X2.8)	27.3	서영식	동산7동 888-10		
					창고	콘크리트조 4.0X9.2/스레트	36.8				
					대문	철재 B=2.0 H=1.9	1EA				
					바닥깨기	콘크리트 T=0.1	9.8				
					지붕	스레트 (7.1X2.0)+(7.1X3.5)	1EA				
					지붕	스레트 (9.2X3.0)+(9.2X2.0)	1EA				

연번	시	읍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8	논산	연무	동산	888-90	가옥	콘크리트조 7.5X5.3/스레트	24.8	송남준	동산7동 888-2		
					화장실	콘크리트조 2.0X2.9	5.8				
					바닥깨기	콘크리트 T=0.1	13.5				
					지붕	스레트+기와 (함석) 2.5X7.5	2EA				
					지붕	스레트 2.2X3.6	7.9				
					대문	철재 B=2.4 H=2.1	5				
					담장	시멘트벽돌 H=2.0	2.6m				
					대문기둥	콘크리트 0.5X0.4 H=2.4	2EA				
					가옥	콘크리트조 프라스틱기와	67.8				
19	"	"	"	888-89	담장	시멘트블럭 H=2.1	5.1	한승희	동산7동 888-1		
					담장	시멘트블럭 H=2.1	6.1				
					대문	철재 B=2.1 H=1.8	1EA				
					대문	철재 B=3.8 H=2.1	1EA				
					대문	철재 B=6.4 H=2.1	1EA				
					바닥깨기	콘크리트 T=0.1	73.5				
					가옥	벽돌 16.0X10.3	164.8				
20	"	"	"	894-372	담장	시멘트블럭 H=1.7	5.3m	이의정	동산7동 894-211		
					담장	시멘트블럭 H=1.9	11.4m				
					대문	철재 B=2.4 H=1.9	1EA				
					바닥깨기	콘크리트 4.8X3.5	16.8				
21	"	"	"	894-373	가옥	콘크리트 7.9X2.3/스레트	18.2	황정연	동산7동 894-212		
					담장	시멘트블럭조 H=1.5	2.3m				
					담장	시멘트블럭조 H=2.5	1.1m				
					대문기둥	콘크리트 0.4X0.4 H=2.1	2EA				
					대문	철재 B=1.7 H=1.8	1EA				
					바닥깨기	콘크리트 4.8X1.5	7.2				
					지붕	스레트	3.4				
					향나무	30년생	1주				

연번	시	읍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2	논산	연무	동산	886-7	상가	조립식건축/조립 식판넬	18.9	박노선	동산7동 886-4		
					가옥	콘크리트블럭	59.7				
					대문	철재 H=1.4	0.8m				
					담장	콘크리트 H=1.5	15m				
					바닥깨기	콘크리트	32.5				
23	"	"	"	887-18	가옥	조립식건축 6.7X9.7/스레트	63.0	박경자	동산리 887-8		
					처마	스레트 B=0.8 L=6.5	6.5				
					대문	철재 H=2.2	1EA				
24	"	"	"	887-19	가옥	조립식건축/스레 트	24.3	최성욱	동산리 887-9		
					처마	스레트 B=1.0 L=2.5	2.5				
					대문	양철 B=1.6 H=1.8	1EA				
25	"	"	"	887-20	세탁소	콘크리트 2.2X6.5/스레트	14.3	박경자	동산리 887-8		
					세탁소	콘크리트 5.0X6.5/스레트	32.5				
					처마	스레트 B=0.8 L=5.0	4.0				
					계단	철재 B=1.0 L=3.8	5m				
					바닥깨기	콘크리트	16.9				
					대문	철재 B=1.5 H=1.8	1EA				
26	"	"		887-21	가옥	콘크리트/스레트	96.0	박경자	동산리 887-8		
					담장	콘크리트 H=2.0	5m				
					처마	스레트 7.0X1.5	10.5				
					바닥깨기	콘크리트	12.0				
					대문	철재 B=1.2 H=1.7	1EA				
					감나무	20년생	1주				
27	"	"		887-22	상가	콘크리트/스레트	87.9	진흥섭	동산리 887-12		
					창고	콘크리트 2.2X2.5	5.5				
					채양	함석 1.8X4.0	9.6				
					대문	샤시 B=11.5 H=2.0	4.7				
28	"	"		894- 115	가옥	적벽돌/스레트	114.1	이용신	동산리 894-115		
					채양	스레트	13.5				
					대문	철재 B=2.0 H=1.6	1EA				
					담장	콘크리트블럭 H=1.6	16.7m				
					마당	콘크리트 T=0.1	44.8				

연번	시	읍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9	논산	연무	동산	894-129	창고	콘크리트 3.4X2.2/스레트	7.5	배이단	동산리 894-129		
					식당	콘크리트 3.6X5.8/스레트	20.9				
					식당	콘크리트 5.3X3.4/스레트	19.7				
					채양	스레트 3.5X7.9	53.8				
					대문	철재 B=2.0 H=1.6	1EA				
					담장	콘크리트 H=1.6	1.8m				
					바닥깨기	콘크리트	59.9				
					창고	콘크리트 1.1X2.3	2.5				
30	"	"	"	894-130	창고	콘크리트/슬라브	42.7	김갑수	동산리 894-130		
					채양	함석 0.8X9.7	7.8				
					담장	콘크리트 H=2.0	7.0				
31	"	"	"	894-970	담장	콘크리트 H=1.7	5m	장춘정	동산리 894-136		
32	"	"	"	894-344	담장	콘크리트 H=1.7	11.7m	강신점	동산리 894-137		
33	"	"	"	894-160	가옥	콘크리트/기와	81.7	석봉길	동산리 894-160		
					창고	콘크리트/스레트	25.3				
					부엌	콘크리트/스레트	7.9				
					대문	철재 B=1.8 H=1.8	1EA				
					담장	콘크리트 H=1.6	22.9m				
					채양	스레트	16.7				
					채양	스레트	50.2				
					바닥깨기	콘크리트	147.3				
					감나무	30년생	1주				
					석류나무	10년생	2주				
34	"	"	"	894-163	가옥	콘크리트/스레트	109.3	정양균	동산리 894-163		
					대문	철재 B=1.6 H=1.6	1EA				
					바닥깨기	콘크리트	57.3				
					담장	콘크리트블럭 H=1.6	6m				
35	"	"	"	894-164	가옥	콘크리트/스레트	109.3	유종하	대전동구 가양동 431-10		
					대문	철재 B=1.2 H=1.8	1EA				
					담장	콘크리트 H=2.0	1.8m				

연번	시	읍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6	논산	연무	동산	894-168	창고	콘크리트/슬라브	8.5	김해웅	동산리 894-168		
					채양	양철 B=1.6 H=1.8	20.1				
					가옥	콘크리트/기와	50.1				
					조립식건물	조립식건축	23.8				
					컨테이너	철재 3.0X6.8	20.4				
					담장	콘크리트 H=1.8	36.2m				
					대문	철재 B=2.7 H=2.0	1EA				
					바닥깨기	콘크리트	62.9				
					감나무	5년생	6주				
					석류나무	5년생	1주				
					대추나무	10년생	1주				
					은행나무	5년생	1주				
37	"	"	"	894-179	대문슬라브	콘크리트	6.8	김의겸	동산리 894-179		
					대문	철재 B=2.8 H=2.0	1EA				
					담장	콘크리트 H=1.8	10.4m				
					화장실	콘크리트 /슬라브	9.4				
38	"	"	"	894-371	가옥	콘크리트/스레트	53.3	김의겸	동산리 894-141		
					담장	콘크리트 H=1.6	3m				
					대문	철재 B=1.8 H=1.6	1.8m				
					바닥깨기	콘크리트	22.0				
39	"	"	"	894-374	대문	철재 B=1.8 H=1.8	1.8	장영숙	동산리 894-225		
					담장	콘크리트 H=1.8	7.4m				
					바닥깨기	콘크리트	27.5				
					대추나무	30년식	1주				
40	"	"	"	894-375	대문슬라브	콘크리트	6.3	김동기	동산리 894-226		
					대문	철재 B=3.0 H=2.0	1EA				
					창고	적벽돌/슬라브	10.2				
					담장	콘크리트 H=2.0	2.4m				
					바닥깨기	콘크리트	12.1				
					감나무	30년생	1주				
					석류나무	15년생	1주				

연번	시	읍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1	논산	연무	동산	889-386	어린이집	조립식건축2층	179.3	김헌택	동산리 894-230		
42	"	"	"	894-376	가옥	콘크리트/슬라브	20.3		동산리 894-246		
					채양	양철 B=1.6 H=1.8	19.5				
					창고	콘크리트/스레트	4.3				
					바닥깨기	콘크리트	37.5				
					담장	콘크리트 H=2.0	4.4m				
					대문	철재 B=1.0 H=2.0	1m				
43	"	"	"	894-377	상가	콘크리트+적벽 돌/스레트	74.7	조말남	동산리 894-247		
					창고	조립식건축	22.8				
					상가	콘크리트/슬라브	77.5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전몰군경유족⇒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결정(안 제3조제2항)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5만원⇒10만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월 5만원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참고1, 참고3 참조

6. 예산조치 : 붙임 - 비용추계서

7. 참고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2018. 11.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 3) 규제심사 : 2018. 11.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11. ~ 2018. 11. (기간 중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수렴
- 5) 충청남도소관실과 : 복지정책과(041-635-424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을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말한다.

4.“전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한다.

5.“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

6.“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를 말한다.

7.“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은 월10만원으로 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는 월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 민 기
	복지정책팀장	이 상 창
	담당자	한 기 석 (746-5274)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u>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u> 2. “전몰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 ----- 1. ----- ----- <u>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u> ----- ----- 2. (현행과 같음) 3.“순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말한다. 4.“전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한다. 5.“공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 6.“무공수훈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를 말한다. 7.“특수임무수행자”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u>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u>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5만원으로 한다.	<u>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u>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은 월10만원으로 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는 월 5만원으로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정의)
-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나. 추계결과 : 468,000천원

▶ 2019년 전몰·순직군경 유족 수당 지원 : : 210,000천원

- $100,000\text{원} \times 175\text{명} \times 12\text{월} = 210,000\text{천원}$

▶ 2019년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수당 지원 :258,000천원

- $50,000\text{원} \times 430\text{명} \times 12\text{월} = 258,000\text{천원}$

3.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

〈연도별 증가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시 비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세 출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 년도별 증가분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재원 조달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지방세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세외수입						
	기금이자수 익금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참고 2

타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단위:명, 천원)

사군 수당명	보훈명예 수당			비고
	전몰/순직 유족	전상/공상	무공/특수	
천 안	50	-	50	
공 주	75	75	50	
보 령	50	-	50	
아 산	100	50	50	
서 산	100	50	-	
논 산	50		-	
계 룡	50	50	-	
당 진	75	-	-	
금 산	100	50	50	
부 여	50	-	-	
서 천	100	50	50	
청 양	50	-	-	
홍 성	100	50	50	
예 산	100	100	100	
태 안	100	100	100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5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장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논산시공고제2018-16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2018년 기준 인건비 정원증가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 인력증가분을 직급·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 민선7기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의 합리적인 조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경쟁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 인력 증원분을 반영한 직급·직렬별 정원표 정비 (안 제20조, 안 별표5, 별표 6)
 - ▶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 7명 증
 -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증가분 : 20명 증(시간외수당 지급시간 조정 및 연가사용 축진을 통한 인건비 절감액에 대한 인력 충원)
- 나.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안 제7조의2)
 - 신 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마을자치과, 정보통신과
 - 명칭변경 : 자치행정과, 농정과, 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
- 다. 부서 이관(안 제5조)
 - 친절행정국 환경과 ⇒ 행복도시국 환경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12.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0-701/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041-746-5233, FAX 041-746-52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 마을자치과”로, “문화예술과”를 “100세행복과, 문화예술과”로, “100세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마을공동체, 자치분권, 마을자치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전산정보,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농정과”를 “환경과, 농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자원 및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과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구의 설치) 체계적인 도시계획 구상 및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80명”을 “1,00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66명”을 “99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6명”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자 치 행 정 과 장	박 찬 해
	인 사 팀 장	윤 승 우
	담 당 자	황 준 용 (746-5233)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3퍼센트 이내	25퍼센트 이내	6퍼센트 이상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내	88퍼센트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 율	0퍼센트	34퍼센트이내	0퍼센트	66퍼센트이상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소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 사무국
총 계	1,007	991	991				16	16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962	946	946				1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1
5급	55	53	30	6	2	15	2	2
6급 이하	901	888	888				13	13
별정직 계	3	3	3					
6급상당 이하	3	3	3					
연구직 계	4	4	4					
연구관								
연구사	4	4	4					
지도직 계	37	37	37					
지도관	4	4	4					
지도사	33	33	3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친절행정국) ① 친절행정국에 <u>자치행정과</u>,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문화예술과</u>,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u>100세행복과</u>, 세무과, <u>회계과</u>, <u>환경과</u>, <u>민원토지과</u>를 둔다. ② 친절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u>환경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자원 및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u> 16. ~ 19. (생략) 〈<u>신설</u>〉	제4조(친절행정국) ① ----- <u>행정지원과</u>, <u>마을자치과</u>----- <u>100세행복과</u>, <u>문화예술과</u>----- <u>세무과</u>, <u>회계과</u>, <u>정보통신과</u>-----. ② -----. 1. ~ 14. (현행과 같음) 15. <u>마을공동체, 자치분권, 마을자치에 관한 사항</u> 16. ~ 19. (현행과 같음) 20. <u>전산정보,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u>
제5조(행복도시국) ① 행복도시국에 <u>사회적경제과</u>, <u>농정과</u>, <u>축산자원과</u>, <u>산림공원과</u>, <u>안전총괄과</u>, <u>희망마을건설과</u>, <u>도시재생과</u>, <u>도로교통과</u>, <u>원스톱허가과</u>, <u>맑은물과</u>를 둔다. ② 행복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조(행복도시국) ① ----- <u>환경과</u>, <u>농업정책과</u>----- -----. ② -----. 1. ~ 15. (현행과 같음) 16. <u>환경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자원 및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u>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980명</u>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66명</u>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u>14명</u>	제20조(정원의 총수) ----- ----- <u>1,007명</u>----- -----. 1. ----- <u>991명</u> 2. ----- <u>16명</u>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5】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u> (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퍼센트 이내</td><td>7퍼센트 이내</td><td>28퍼센트 이내</td><td>33퍼센트 이내</td><td>25퍼센트 이내</td><td>6퍼센트 이상</td></tr></table>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연구직</th><th colspan="2">지도직</th></tr><tr><th>연구관</th><th>연구사</th><th>지도관</th><th>지도사</th></tr><tr><td>비율</td><td>3퍼센트 이내</td><td>97퍼센트 이상</td><td>12퍼센트 이내</td><td>88퍼센트 이상</td></tr></table> 3. 별정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상당</th><th>6급상당</th><th>7급상당</th><th>8급·9급상당</th></tr><tr><td>비율</td><td>0퍼센트</td><td>0퍼센트</td><td>50퍼센트 이내</td><td>50퍼센트 이상</td></tr></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3퍼센트 이내	25퍼센트 이내	6퍼센트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내	88퍼센트 이상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0퍼센트	0퍼센트	50퍼센트 이내	50퍼센트 이상	【별표 5】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u> (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퍼센트 이내</td><td>7퍼센트 이내</td><td>28퍼센트 이내</td><td>33퍼센트 이내</td><td>25퍼센트 이내</td><td>6퍼센트 이상</td></tr></table>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연구직</th><th colspan="2">지도직</th></tr><tr><th>연구관</th><th>연구사</th><th>지도관</th><th>지도사</th></tr><tr><td>비율</td><td>3퍼센트 이내</td><td>97퍼센트 이상</td><td>12퍼센트 이내</td><td>88퍼센트 이상</td></tr></table> 3. 별정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상당</th><th>6급상당</th><th>7급상당</th><th>8급·9급상당</th></tr><tr><td>비율</td><td>0퍼센트</td><td>34퍼센트 이내</td><td>0퍼센트</td><td>66퍼센트 이상</td></tr></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3퍼센트 이내	25퍼센트 이내	6퍼센트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내	88퍼센트 이상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0퍼센트	34퍼센트 이내	0퍼센트	66퍼센트 이상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3퍼센트 이내	25퍼센트 이내	6퍼센트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내	88퍼센트 이상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0퍼센트	0퍼센트	50퍼센트 이내	50퍼센트 이상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3퍼센트 이내	25퍼센트 이내	6퍼센트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내	88퍼센트 이상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0퍼센트	34퍼센트 이내	0퍼센트	66퍼센트 이상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구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사무국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사무국
총계	980	966	966				14	14	총계	1,007	991	991				16	16
정무직계	1	1	1						정무직계	1	1	1					
시장	1	1	1						시장	1	1	1					
일반직계	937	923	923				14	14	일반직계	962	946	946				16	16
3급	1	1	1						3급	1	1	1					
4급	5	4	3	1			1	1	4급	5	4	3	1			1	1
5급	52	50	27	6	2	15	2	2	5급	55	53	30	6	2	15	2	2
6급이하	879	868	868				11	11	6급이하	901	888	888				13	13
별정직계	2	2	2						별정직계	3	3	3					
6급상당이하	2	2	2						6급상당이하	3	3	3					
연구직계	4	4	4						연구직계	4	4	4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4	4	4						연구사	4	4	4					
지도직계	36	36	36						지도직계	37	37	37					
지도관	4	4	4						지도관	4	4	4					
지도사	32	32	32						지도사	33	33	33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논산시공고제2018-166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2018년 기준 인건비 정원증가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 인력증가분을 직급·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 민선7기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의 합리적인 조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경쟁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 인력 증원분을 반영한 직급·직렬별 정원 표 정비 (안 제20조, 안 별표 6)

- ▶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 7명 증
-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증가분 : 20명 증

(시간외수당 지급시간 조정 및 연가사용 축진을 통한 인건비 절감액에 대한 인력 충원)

나. 부서 및 팀 신설(안 제16조의2)

- 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친절행정국 내 마을자치과, 정보통신과 신설
- 팀 : 전략기획실 내 청년인구정책팀 신설
- 마을자치과 내 마을사업팀 신설
- 관광체육과 내 관광운영팀 신설
- 정보통신과 내 빅데이터팀 신설
- 도로교통과 내 교통시설팀 신설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내 식량작물팀 신설

다. 부서 및 팀 명칭변경(안 제10조, 안 제16조의2)

- 부서 :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농정과 ⇒ 농업정책과로 명칭 변경
- 농업기술센터 내 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 ⇒ 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로 명칭 변경

- 팀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 내 작물환경팀, 귀농귀촌지원팀

⇒ 귀농귀촌팀, 과학영농팀으로 명칭 변경

라. 부서 및 팀 이관, 명칭변경(안 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 부서 : 친절행정국 환경과 ⇒ 행복도시국으로 이관

- 팀 : 전략기획실 내 국제교류팀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이관 및 명칭변경

자치행정과 내 주민참여새마을팀 ⇒ 마을자치과 자치새마을팀 이관 및 명칭변경

자치행정과 내 전산정보팀, 정보통신팀 ⇒ 정보통신과 이관

희망마을건설과 내 마을공동체팀 ⇒ 마을자치과 마을자치팀 이관 및 명칭변경

마. 팀 통합(안 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 참여예산실 내 통계팀과 규제개혁팀 ⇒ 규제개혁통계팀으로 통합

바. 부서별 소관사무 등 정비(안 제3조 내지 제39조)

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 직렬 조정(안 별표2,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12.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0-701/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041-746-5233, FAX 041-746-52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논산시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지도·감독 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둘 이상의 국·단·소 또는 실·과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관련되는 국·단·소 또는 실·과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단·소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단·소장은 당면 현안사업, 대규모 종합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조례와 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을 제외한 팀·단 등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 조직을 설치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에 사전 통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사무분장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 분야별로 총괄담당

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본청

제6조(실·단) ① 전략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참여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열린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친절행정국) ① 친절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마을자치과장,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100세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행복도시국) ① 행복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교통과장, 원스톱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희망마을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미래발전사업단) ①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방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소관사무) 본청 각 실장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1조(소장의 직급)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강증진과장, 건강위생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소관사무) 보건소의 과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과장, 역량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6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장 사업소

제17조(소장의 직급)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서울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9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강경읍장, 노성면장, 상월면장, 부적면장, 가야곡면장, 채운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연무읍장, 연산면장, 은진면장, 취암동장, 부창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성동면장, 광석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벌곡면장, 양촌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부읍·면·동장) ①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 동에는 부동장을 두며, 부읍·면·동장은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읍·면·동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② 부읍·동장은 총무분야, 부면장은 주민생활분야 총괄담당이 겸임한다

제21조(읍·면·동 담당분야) 읍·면·동의 담당분야는 별표 5과 같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2조(직급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6, 별표 7,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9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23조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논산시공고제2018-1667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논 산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 나. 타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산정기준 판단 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안 별표19)
- 나.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세부 입지기준을 신설(안 별표24)
- 다. 관련법령 명칭 변경 반영(안 제46조제2호, 안 제4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논산시장 [참조: 도시재생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주택과(전화 : 041-746-6212, FAX : 041-746-6209, E-mail : ppul002@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2) 비용추계서

3)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도시재생과장	홍 재 창
	도시계획팀장	이 현 근
	담 당 자	박 평 운 (746-621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조례 제30조제19호 관련)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방하천은 논산천을 말한다. 같은 규칙 단서 조항에 따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와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 및 폐가를 제외하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별표 18 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2)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3)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5)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가)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나)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1)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4)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별표 24]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 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정의	1.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를 준용한다. 2.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시설을 말한다. 4.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축사”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축사를 말하며, 야적장은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시설을 말한다. 5.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발전시설	1.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웁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숙박시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구 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축사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신설)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 「물환경보전법」-----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 ----- ----- ----- ----- ----- ----- ----- -----.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	1. ----- -----

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또는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다. (생략) 2. (생략)	----- ----- 가.-----, 「<u>물환경보전법</u>」----- ----- ----- ----- -----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별표 24]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 분	현행	개정안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정의	1. (생략) <u><신설></u> 2.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 시설을 말한다. 3.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하며, 야적장은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시설을 말한다. 4.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u>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 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u>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u>축사</u>”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u>축사</u>를 말하며, 야적장은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시설을 말한다. 5.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발전시설	1. <u>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1. <u>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u> ----- ----- -----.

구 분	현행	개정안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발전시설	2.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3.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헨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숙박시설	1. (생략) 2.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1. (생략) 2.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축사	<신 설>	1. <u>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u> 2. <u>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u>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홍 재 창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 6.30.시행)

< I >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허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도시재생과	제안부처	도시재생과
	담당부서	도시계획팀	처리기관	도시계획팀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재생과장 홍재창(746-6200) 도시계획팀장 이현근(746-6211) 도시계획팀 박평운(746-6212)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피규제자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의견내용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발전시설 및 축사 등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 적용 하여야 하므로 기간 설정 곤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당초) -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 300m			
	○ 신설(강화)규제내용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변경) 1) 발전시설 -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미터를 누적인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축사 -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무허가축사적법화 대상은 증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기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불허			
8. 규제체계도	발전시설, 축사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허가신청·신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한거리 검토 논산시 (원스톱허가과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발전시설 및 축사 설치 급증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생활환경 악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1-2.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 발전시설 및 축사의 입지기준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 대안의 검토

-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발전시설 및 축사의 입지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함이 바람직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 태양광발전시설 및 축사에 대한 규제 신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계량화 불가)

☐ 규제의 편익 분석

- 특정 다수의 시민에게는 환산되지 않는 이익(경관, 생활 및 통행불편, 농작물 생육부진 등으로 부터의 최소화)이 발생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입지로 인하여 경관, 통행 등의 여러 가지 환경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쇄 기준이 될 수 있음.(계량화 불가)

□ 비용편익의 분석결과

- 발전시설 및 축사의 입지기준은 지역주민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발전시설 및 축사 입지기준은 적정한 규제임
- 상위법 근거 검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관련 별표 1의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발전시설 및 축사 신설에 따른 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음
-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논산시 전체적으로는 난개발 방지에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